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17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p>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p>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예외로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p>법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p>운수종사자 실명제</p>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p>법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택시운전 자격증명 반납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퇴직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다음조건을 갖춘 기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고, 시속 120km 이상 주행시 과속 경보음 발생 기능 탑재 ○ 장착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앱 등이 개발된 고급택시의 대체미터기와 서울특별시장이 미터기 장착의무를 면제한 심야콜승합에 이용하는 대형(승합)택시에 예외를 인정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p>(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 (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대체미터기(앱 등)를 사용하는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1개월간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 40일 ▸ 3차 : 60일
<p>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p>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p>- 마그네틱 카드 및 IC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p>	<p>법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p>- 선·후불교통카드 인식 터치패드(교통카드 리더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p> <p>※ 다만,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별도의 위치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한다.</p> <p>○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p> <p>○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p>		
음주자 승무금지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p>○ 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승무 또는 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p> <p>○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p>	법 제23조	<p>○ 운송사업자</p> <p>- 과징금 120만원 또는</p> <p>- 사업일부정지</p> <p>· 1차 : 20일</p> <p>· 2차 : 40일</p> <p>· 3차 : 60일</p>
차고지 밖 교대 금지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p> <p>○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p> <p>○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단,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고지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p> <p>※ 단,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해 처분함</p>	법 제23조	<p>○ 운송사업자</p> <p>- 과징금 120만원 또는</p> <p>- 사업일부정지</p> <p>· 1차 : 20일</p> <p>· 2차 : 40일</p> <p>· 3차 : 60일</p>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input type="checkbox"/>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 내 용 】 <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 <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택시 내부 및 외부 광고부착물 (공익성 홍보물 포함) <input type="checkbox"/> 택시 외부 및 외부로 향하는 부착물은 사전에 관련 택시운송 사업조합에서 택시의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택시내부의 광고부착물은 관련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택시호출안내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 외부부착에 관한 사항도 광고부착물 승인절차에 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input type="checkbox"/>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input type="checkbox"/>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개인택시 부제운행	【 내 용 】 <input type="checkbox"/>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input type="checkbox"/>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 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나·다 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와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운휴하는 조로 구분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법 제23조	<input type="checkbox"/>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 위반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개인택시 부제표시	<p>【 내 용 】</p> <p>□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p> <p>□ 준수사항 : 부제표시방법</p> <p>○ 외부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 「개인」, 운휴조, 조합명, 하이서울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운휴조별로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바탕 색상을 “가” 조는 파란색, “나” 조는 오렌지색, “다” 조는 초록색, “라” 조는 보라색과 자주색(1,3번호표기), 수요 대응형 택시 ”9“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글씨로 한다. 운휴조에 따라 각각  ,  ,  ,  ,  로 타원형(120mm×95mm)안에 운휴조, 고유발급번호, 하이서울, 조합명을 표시하고 직인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한다.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측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뒷 유리창 : 가로120mm × 세로95mm - 부착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측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 뒷 유리창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한다. ○ 단, 측면광고부착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을 허용한다. (일반택시의 회사명, 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용) <p>※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한 때, 파·훼손 되었을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단, 퇴색된 표시증을 부착하거나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1차는 적발시 경고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시 미부착으로 간주한다.</p>	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10만원 · 2회 : 15만원 · 3회 : 2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택시운전 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 내 용 】 <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 (택시요금표는 모범택시, 대형택시에 적용하되,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지정부착물 등 게시 및 갱신 ○ 규격 - 택시운전자격증명 : 가로 148mm × 세로 105mm - 민원안내스티커 : 가로 85mm × 세로 105 mm ○ 부착위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조수석 앞 선반 위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 민원안내스티커 : 택시운전자격 증명과 함께 게시한다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옆문 손잡이 주변) - 택시요금표 : 오른쪽 뒷문 외부 (모범·대형택시에 적용하되,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 ○ 위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위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용)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부착된 경우 위 부착물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은 부착을 금지한다. ○ 다만, 고급택시 및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의 경우 전자적 매체·기기를 통한 게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부당 시계외 할증 적용 등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택시 미터기 화면에 어떠한 부착물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법 제21조, 법 제26조	【택시운전자격 증명】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5일 ○ 운수종사자 - 자격정지 ・1차 : 5일 ・2차 : 5일 【지정부착물】 ○ 운송사업자 - 과징금 2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 【택시운전자격증명】 <input type="radio"/>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input type="radio"/>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규칙 (별표5) 위반사항 11, 다에 의한 운전자격정지 처분 【지정부착물】 <input type="radio"/>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input type="radio"/>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택시 외부표시	【 내 용 】 <input type="checkbox"/> 대상 : 택시 <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택시표시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차량색상, 택시표시문자 <input type="radio"/> 택시표시등(방법등) 및 빈차(예약)표시등 설치 - 부착위치 : 택시표시등(실내등을 기준으로 루프 중앙) 빈차표시등(앞 유리 중앙 상단) - 규격(택시표시등) : 가로400mm × 세로250mm × 높이140mm - 색 상 : 아래 표와 같다. <table border="1" data-bbox="352 1547 1054 1720"> <thead> <tr> <th>구분</th> <th>앞/뒷면바탕색</th> <th>앞/뒷면글자색</th> <th>옆면/윗면바탕색</th> </tr> </thead> <tbody> <tr> <td>브랜드법인</td> <td>SCN017</td> <td>한강은백색</td> <td>꽃담황토색</td> </tr> <tr> <td>브랜드개인</td> <td>한강은백색</td> <td>파란색 / SCN019</td> <td>꽃담황토색</td> </tr> <tr> <td>일반택시</td> <td>SCN017</td> <td>한강은백색</td> <td>꽃담황토색</td> </tr> <tr> <td>개인택시</td> <td>한강은백색</td> <td>파란색 / SCN019</td> <td>꽃담황토색</td> </tr> </tbody> </table> - 글 씨 : 아래 표와 같다. <table border="1" data-bbox="352 1800 1054 2024"> <thead> <tr> <th>구분</th> <th>전면글자</th> <th>후면글자</th> <th>우측/좌측</th> </tr> </thead> <tbody> <tr> <td>브랜드법인</td> <td>서울</td> <td>CARD TAXI BRAND</td> <td rowspan="2">해치+CARD(우측)/ 해치+BRAND(좌측)</td> </tr> <tr> <td>브랜드개인</td> <td>서울</td> <td>CARD TAXI BRAND</td> </tr> <tr> <td>일반법인</td> <td>서울</td> <td>TAXI</td> <td rowspan="2">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td> </tr> <tr> <td>개인택시</td> <td>서울</td> <td>TAXI</td> </tr> </tbody> </table>	구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브랜드법인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브랜드개인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구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브랜드법인	서울	CARD TAXI BRAND	해치+CARD(우측)/ 해치+BRAND(좌측)	브랜드개인	서울	CARD TAXI BRAND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법 제17조	<input type="radio"/> 운송사업자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 1회 : 10만원 ▶ 2회 : 15만원 ▶ 3회 : 20만원
구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브랜드법인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브랜드개인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 / SCN019	꽃담황토색																																						
구분	전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브랜드법인	서울	CARD TAXI BRAND	해치+CARD(우측)/ 해치+BRAND(좌측)																																						
브랜드개인	서울	CARD TAXI BRAND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구분	현행	관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p>- 모범 및 대형 등 색상 및 글씨 : 아래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347 347 1061 465"> <thead> <tr> <th>구분</th> <th>바탕색</th> <th>글씨</th> <th>전면글자</th> <th>측면글자</th> <th>후면글자</th> </tr> </thead> <tbody> <tr> <td>모범택시</td> <td>황색</td> <td>흑색</td> <td>TAXI모범</td> <td>개인</td> <td>모범</td> </tr> <tr> <td>대형택시</td> <td>황색</td> <td>흑색</td> <td>대형TAXI</td> <td>법인(개인)</td> <td>TAXI</td> </tr> </tbody> </table> <p>※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는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p> <p>-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p> <p>-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p> <p>※ 모범운전자 택시표시등은 2010.4.16.일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따른다.</p> <p>○ 차량색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택시 : 신규차량은 완전꽃담황토색으로 등록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정색 - 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기타 개인택시, 고급택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브랜드 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p>○ 택시표시 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택시 <table border="1" data-bbox="351 1366 1082 1556"> <tbody> <tr> <td>내용</td> <td>회사명 + 택서관리번호 3자리</td> </tr> <tr> <td>규격</td> <td>회사명 (H60mm×W변화치수), 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td> </tr> <tr> <td>색상 및 서체</td> <td>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td> </tr> <tr> <td>표시위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후면 : 트렁크 위의 번호판 우측 상단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표시」 참조 -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 택시의 문자표시, 해치로고, 브랜드엠블럼, 콜센타 전화번호 표시 위치와 크기, 색체, 서체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p>○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때, 파훼손·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p>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내용	회사명 + 택서관리번호 3자리	규격	회사명 (H60mm×W변화치수), 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후면 : 트렁크 위의 번호판 우측 상단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내용	회사명 + 택서관리번호 3자리																												
규격	회사명 (H60mm×W변화치수), 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치수)																												
색상 및 서체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후면 : 트렁크 위의 번호판 우측 상단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p>※ 단,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 고급택시,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라'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택시호출 이행의무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호출서비스 예약 또는 지정배차에 대한 운송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타목에 의한 과태료 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 위반 사항 4호 가목에 의한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 (개인택시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20만원 또는 - 택시운전 자격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10일 ▸ 2차 : 20일
친절 운행 이행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한 입증 가능한 사항)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지시된 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 반 시 조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적용 -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10만원 ▸ 2회 : 10만원 ▸ 3회 : 1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택시 청결의무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운행전 점검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가 지시한 대로 택시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청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일 1회 이상 택시 내외부를 세차하여야 한다. 2. 택시 내에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에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 너목에 의한 과징금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따른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3일 · 2차 : 5일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10만원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하며, 지정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급택시 운수종사자는 정장양복 또는 지정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금지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장복장 등 용모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p>〈 택시 금지복장 〉</p> <table border="1" data-bbox="339 1653 1034 2022"> <thead> <tr> <th data-bbox="339 1653 427 1697">구분</th> <th data-bbox="427 1653 1034 1697">금 지 복 장</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39 1697 427 1843">상의</td> <td data-bbox="427 1697 1034 1843">·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td> </tr> <tr> <td data-bbox="339 1843 427 1910">하의</td> <td data-bbox="427 1843 1034 1910">· 반바지, 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td> </tr> <tr> <td data-bbox="339 1910 427 2022">모자</td> <td data-bbox="427 1910 1034 2022">·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td> </tr> </tbody> </table>	구분	금 지 복 장	상의	·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 반바지, 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법 제21조, 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3일 · 2차 : 5일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10만원
구분	금 지 복 장										
상의	· 풀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 반바지, 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구 분	현 행	관 련 법 조 문	위 반 시 처 분 대 상 및 내 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신발</td> <td>·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td> </tr> <tr> <td>기타</td> <td>·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p><input type="radio"/> 운송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법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4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에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6 너목에 의한 과징금 <p><input type="radio"/> 운수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8호, 법제94조제3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타	·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교 육	<p>【 내 용 】</p>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 교육 당일 특별근로(공가처리) 등 교육의무를 다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p><input type="radio"/> 운송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88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46조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p><input type="radio"/> 운수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법제94조제3항제4호 적용 -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따른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30만원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부 칙	① (시행일) 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2017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